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 비교

한상연*
Eunok Im**

| 목 차 |

I. 서론	9. 한국	
II. 주요 국가의 연구윤리법제도	III. 각국의 연구윤리 법제도 비교 및 유형화	
1. 노르웨이	2. 핀란드	1. 비교분석의 주요 시사점
3. 덴마크	4. 호주	2. 국가별 법제도의 유형화
5. 미국	6. 영국	IV. 맺는말
7. 캐나다	8. 일본	

| 논문요약 |

지난 2007년 OECD에서 국제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조체계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등에 따라 연구윤리의 개념이 다르게 이해될 수는 있지만 효과적인 연구윤리 법제도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질 때 이런 국제적 공조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연구윤리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 법제도에 관해 우리보다 앞서가는 국가로 평가되는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와 보통 수준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영국, 핀란드, 캐나다, 일본, 호주의 국가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국가차원의 단일한 연구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h.D Candidate.

윤리법과 전문화된 연구윤리조직이 없는 한국은 영국, 캐나다와 함께 중간정도 수준의 연구윤리거버넌스 체계를 구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제어: 연구윤리, 연구진실성,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법체계, 연구윤리거버넌스

I. 서론

연구활동은 학문 간의 경계 뿐 아니라 국가경계를 넘어 진행되는 만큼 주요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체계를 마련해서 국제 공조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 차원의 연구윤리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OECD가 2007년에 국제연구진실성위원회(International Research Integrity Committee)를 설립하였고 동년 9월에는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과 미국 연구진실성 관련 정부기관(US 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의 후원으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처음으로 ‘연구진실성을 위한 세계학술대회(World Congress on Research Integrity)’가 열리고 2010년 7월에 싱가포르에서 2차 회의, 2013년 5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¹⁾ 우리도 이제 국제적 차원의 공조체계 참여를 적극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등에 따라 연구윤리의 개념이 다르게 이해될 수는 있지만 효과적인 연구윤리 법제도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즉 단순하고 명료하게 연구윤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며, 규정과 절차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하는 것이다(Fischer, 2010: 7).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연구윤리 관련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 제도의 차이점

1) 연구진실성을 위한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설립배경은 Melissa S. Anderson (2008). "Science Integrity: Maintaining the Legitimacy of the Research Enterprise".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참고.

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학문연구윤리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윤리 법제도에 관해 우리보다 앞서가는 국가로 평가되는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와 보통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핀란드, 캐나다, 일본, 호주의 국가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외국의 법규정 등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사례 국가 해당 기관의 보고서, 웹사이트 및 선행연구를 통해 입수하였다.

II. 주요 국가의 연구윤리 법제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로 알려져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모범 국가들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의 관련 법제도를 살펴본다.

1.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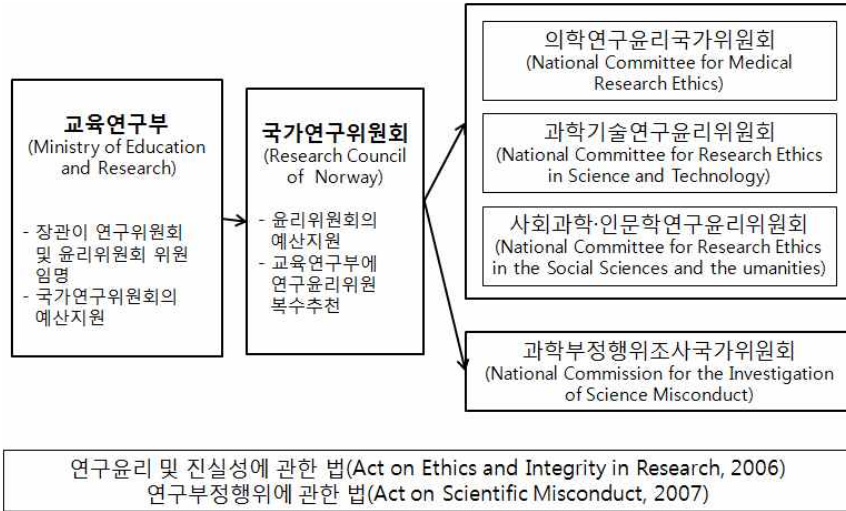
노르웨이는 전 학문분야의 연구윤리를 다루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세계에서 최초로 설치한 국가다(Kalleberg, 2011). 그러나 이는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고 2006년에 만든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에 관한 법(Act on Ethics and Integrity in Research 2006)’으로 가시화된 결과다. 물론 이전에도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노르웨이의 노력은 거의 20년간 지속되어 1990년에 국가연구윤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94년에는 국가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of Norway)에서 의학연구부정행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의 황우석사건과 같이 국가적 이슈가 된 연구 부정행위가 2006년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²⁾

2) 2006년 1월 오슬로대학의 과학자이며 치의학자인 Jon Sudbø교수가 구강암 연구

(1) 관련 조직 및 법규정

2006년 제정된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에 관한 법’은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을 위한 공인된 윤리표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이를 통해 전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3개의 위원회, 즉 국가의학보건연구윤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edical and Health Research Ethics: NEM), 국가과학기술연구윤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NENT), 사회과학·인문학연구윤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NESH)와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부정행위조사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Research Misconduct)를 설립하게 된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연구윤리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으로 재심청구가 불가하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에 최고의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위원은 교육연구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사법부 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특징이 있다. 국가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부정행위조사위원회의 운영예산은 노르웨이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of Norway)에서 지원하고 있다.

와 관련된 자료조작 행위를 박사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국내외 330건의 언론보도에서 다루어지는 큰 관심을 받게 된 일이 있었다(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73).



출처: 노르웨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³⁾

<그림 1> 연구윤리에 관한 노르웨이의 거버넌스체계

(2) 특징 및 시사점

노르웨이 제도 중 특히 주목할 내용은 국가 연구윤리정책을 포괄하는 단순명료한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모든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연구윤리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여 과학기술, 인문사회, 의학 3개 분야를 담당하는 3개의 국가연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법은 민간부문에 적용된다. 과학부정행위조사국가위원회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연구비가 관련된 연구과제에도 간여하도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국가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조사권을 부여한 유일한 국가다. 이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략 연 4회의 정기회의를 갖는다. 이 조사위원회가 각 연구기관에 부정행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각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에 자율권을 주고 사법부와 연계를 통한 최종 결정권을 부

3) www.etikkom.no/en/In-English/ 2012년 10월 8일 접속

여한 점도 특이하다.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전담하는 과학부정행위 조사국가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각에 의해 구성된 국가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대신 국가위원회 결정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부 경력이 있는 사람과 일반 시민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를 포함한 4개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수도 오슬로에 위치한 전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구윤리문제에 관한 노르웨이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고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르웨이의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가 너무 발전한 것의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Kelleberg(2011)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이 너무 활발하여 일반 국민이 연구는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관련 국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 다수 위원회 간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2.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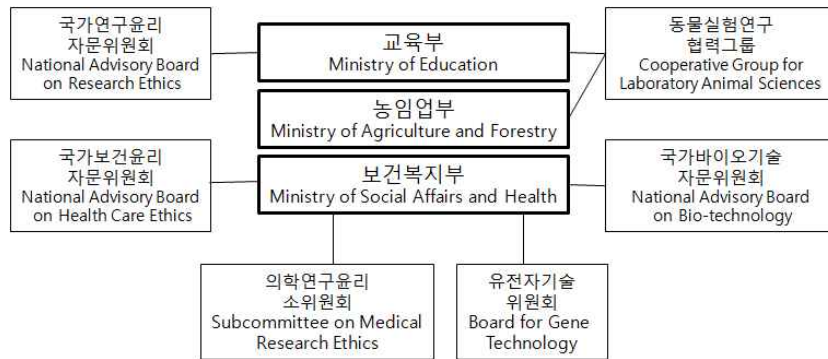
(1) 관련 조직 및 법규정

핀란드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은 연구기관을 법제도나 교회사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으며 핀란드인의 80%가 자국의 과학연구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⁴⁾ 이런 배경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탄탄한 국가거버넌스 체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연구윤리 문제는 소속 기관의 책임이지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⁵⁾ 이 위원회는 1991년에 공포된 국가연구윤리위원회 설치령(Decree on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에 의해 만들어진 자

4) Finland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2006). Ethical Evaluation of Research Ethics in Finland. 3쪽.

5) 핀란드에 관한 자료는 핀란드 연구윤리국가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함. Finland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2006). Ethical Evaluation of Research Ethics in Finland.

문기구로 이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교육부장관이 3년 임기로 의장을 포함 10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1년에 7회 정기회의를 갖는다(p.5).



출처: Finland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2006). *Ethical Evaluation of Research Ethics in Finland*. 4쪽

<그림 2> 핀란드의 연구윤리 관련 기관 및 제도

안락사를 예로 들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윤리 문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보건의료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Board on Health Care Ethics)에서 자문을 하고 의학연구의 관한 윤리문제는 이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인 의학연구윤리소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유전자에 관한 연구는 유전자기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국가보건의료윤리자문위원회는 ‘환자의 신분 및 권리에 관한 법’(Act on the Status and Rights of Patients)을 1998년 개정하면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윤리문제의 토론을 위한 일종의 포럼 기능을 한다. 20명의 위원에는 환자, 의료계, 법조계, 학계를 대변하는 위원과 최소 4인의 국회의원이 포함된다. 이처럼 핀란드의 경우 연구윤리정책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크지만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문제는 교육부와 농림업부에서 공동으로 협력그룹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2) 특징 및 시사점

핀란드에서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1991년에 공포된 국가연구윤리위원회 설치령과 이에 따라 설치된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기구는 자문기구로 그 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징이 있다. 핀란드에는 연구윤리 관련법을 연구분야 별로 제정하여 예를 들면 인간과 관련된 연구의 윤리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학연구법이고 유전자변형에 관한 연구는 유전자기술에 관한 법(Act on Gene Technology, 1995)에 의해 규제된다.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전임 위원장인 Vuorio(2010)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자 개인의 이력서, 논문목록, 언론과 법정에서의 발언 등에도 윤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연구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보완할 계획이다.

3. 덴마크

(1) 관련 조직 및 법규정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이 분야의 핵심 조직은 중앙부처인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산하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청(Danish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조직 아래 1999년에 설치한 덴마크 과학부정행위위원회(Danish Committee on Scientific Dishonesty)이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청은 덴마크연구청(Danish Research Agency)을 2006년에 새롭게 개편한 기구로 공공부문에서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⁶⁾ 덴마크과학부정행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청

6) 덴마크 과학기술혁신청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한 자료는 덴마크 정부의 공식사이트에서 입수하여 활용하였음(<http://en.fi.dk/the-agency>)

아래 설치된 연구정책위원회, 기술혁신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중의 하나로 행정명령에 의해 그 기능과 조직이 규정되어 있다.

덴마크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핵심 규정은 내각의 의결로 만들어진 ‘덴마크 과학부정행위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Danish Committees on Scientific Dishonesty)’이다. ‘연구지문에 관한 법(Act on Research Advice)’의 위임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부에서 만들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규정으로 참고할 가치가 큰 내용을 담고 있다.

(2) 특징 및 시사점

덴마크는 과학기술혁신부장관의 규정(행정명령)으로 과학부정행위 조사 및 심의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전문화하여 의학,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3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연구부정행위를 변조, 조작, 표절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방식을 사용한 것을 밝히지 않는 행위, 저자의 공로를 잘못 인정하거나 연구제목 또는 연구가 행해진 장소를 잘못 표기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의 자격 및 의무를 규정하여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가 제기한 사안을 심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보자는 과학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위원회가 사안 처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두어 제보자의 자격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선별 및 재심의 결정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인정한 특징도 있다. 제기된 모든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일에 위원회의 큰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제기된 사안이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제기된 사안을 심의하는 비용이 그 사안의 중요성보다 훨씬 클 경우 등 위원회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별권을 허용한 특징이 있다. 또한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이 오는 경우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전 심의 시 없었던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또 이 자료가 심의결과를 바꿀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 본 위원회에 이

런 권한을 주는 이유는 무분별한 제보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자는 것으로 짐작된다.

통합위원장과 예비위원제도를 활용한 점도 눈의 띈다. 3개 위원회에 개별 위원장을 두는 대신 고등법원 판사 중에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이 임명하는 1인의 통합위원장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두어 필요시 역할을 대신하도록 조치한 점이 특이한 사항이다. 3개 위원회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덴마크 사례의 특이점은 위원의 기본 자격으로 연구경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 이들을 총괄하는 위원장은 고등법원 판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실제 연구경험이 많은 위원들이 연구진실성 검증에 하고 이 과정을 법리적 틀로 이끌고 나가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2008년 본 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나열된 위원은 6명으로 Aalborg대학의 수학과 교수, Aalborg대학의 도시계획과 교수, 코펜하겐대학의 생명과학과 교수, 덴마크기술대학의 수학과 교수, 코펜하겐대학의 조경학과 교수, 정부 풍력에너지부(Department of Wind Energy)의 연구원이고 위원장은 동부덴마크 고등법원 판사이다.

덴마크의 연구윤리제도는 법규정에 기초하여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한 장점이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중앙부처 및 위원회가 개입을 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연구기관이 연구 부정행위에 관해 중앙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덴마크 정부의 법규정은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한정되어 연구부정행위위원회의 부정행위 심의건수가 년 평균 10건으로 적은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중앙기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조직의 유지비용보다 그로 인해 얻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

4. 호주

(1) 관련 조직 및 법규정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경우도 인간과 동물에 관한 연구의 윤리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져서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설치법(1992)에 호주보건윤리위원회(Australian Health Ethics Committee: AHEC)설치규정이 마련되었고⁷⁾ 1997년에는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와 호주대학부총장협의회(Australian Vice Chancellors' Committee: AVCC)가 공동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성명서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1999년에는 '인간 관련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국가지침'이 제시되었고 2007년에는 1997년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국가 규정'이 발표되었다. 2011년 2월에는 호주 역사 상 처음으로 전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호주연구진실성위원회'가 발족하였다.

호주보건윤리위원회(AHEC)의 기능은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에 연구윤리에 관한 자문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사항은 그 위원회의 구성이다. 관련법(NHMRC Act)에 다양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필요한 전문영역을 철학, 의료연구윤리, 공중보건, 사회과학, 임상의학, 간호학, 장애인 관련 부문, 법학, 종교학, 의료소비학으로 명시하고 있다.⁸⁾

2001년 호주의 연구윤리제도를 발전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과학자이며 의사인 Bruce Hall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4명의 내부 제보자가 무려 450건의 의혹을 제기하여 5년간 조사를 하였으나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 호주대학협의회(Universities Australia),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가 공동으로 1997년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2007년에 새로운 윤리지침인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국가 규

7) 본 위원회에 관한 자료 출처: <http://www.nhmrc.gov.au/> 2012.10.10

8) <http://www.nhmrc.gov.au/>

정'(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발간하게 된다.⁹⁾ 국가연구비를 신청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으로 40쪽에 달하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국가지침'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심의를 위한 국가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009년 국가연구비의 주요 집행기관인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와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및 연방부처인 혁신산업과학연구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가 주요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학 연합조직(Universities Australia와 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과 협의하여 국가연구윤리조직에 관한 안을 만들었고 2011년 2월에 드디어 '호주연구진실성위원회(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ARIC)'가 탄생하게 된다.¹⁰⁾ 이 위원회의 활동영역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 예를 들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직접 받거나 처리하지 않으며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간여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연구기관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간여하지 않도록 하여, 이 위원회의 기능을 검토(review)에 한정하였다. 즉 개별 기관이 정부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상위기관인 호주연구위원회와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에 보고하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¹¹⁾

(2) 특징 및 시사점

호주의 제도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미흡한 특징이 있다. 호주는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법적인 조치가 아닌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적 준수에 의존하고 있다. 지침 준수사항

9)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p.105

10) Australian Research Council (2011). p.4

11) 상계서. p.6

은 국가연구비의 양대 집행기관인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와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에서 모니터하며 연구비 지원과 중단이 유일한 통제 수단이다(Dyke, 2010). 호주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국가지침’은 매우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장점이 있으나 시행 수단이 미흡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윤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에 설치한 호주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직접 받거나 처리하지 않으며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간여하지 않는다. 해당 운영규정에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을 정도로 이 위원회의 역할은 검토(review)와 모니터링 및 상부기관에의 보고로 제한되어 있다. 1기로 임명된 위원의 수도 위원장 포함하여 4인에 불과하다.¹²⁾ 결국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국가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사법부가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에 의존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5. 미국

미국은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매우 앞선 나라로 평가받는다. 1974년 면역학자인 윌리엄 서머린(William Summerlin)이 흰 쥐의 피부 일부를 검은 색 펜으로 칠한 후 검은 쥐의 피부 이식에 성공한 것처럼 발표한 연구부정행위가 이 분야의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¹³⁾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에 거의

12)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현재 항공소음 옴브즈만(Aircraft Noise Ombudsman)인 Mr. Ron Brent이다(Media Releas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11 January 2011, <http://www.arc.gov.au/media/releases/>).

13) 과학기술부(2007). p.11

모든 연구중심 대학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¹⁴⁾ 연방차원의 노력도 활발하여 1989년에는 국가과학재단 내에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을 설치하고 1993년에는 보건성 내에 연구진실성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을 설치하여 이 양대 기관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국가연구윤리조직으로 평가받게 된다. 양대 조직중심의 연구윤리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 12월에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연방정책’을 발표하여 기타 연방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연구부정행위정책 지침을 제시하였다.

(1) 관련 조직 및 법규정

미국 최초의 연구윤리 관련법은 1974년에 제정된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라 할 수 있다.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공중보건청이 600명의 저소득 흑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매독 임상연구(Tuskegee Syphilis Study)의 비윤리성이 밝혀지며 그 대응조치로 만들어진 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각 기관 내 기관검토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설치하여 연구윤리 부분의 검토를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생의학·행동과학연구의 연구대상인 인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를 설치한 것이 미국 연구윤리제도의 시작인 셈이다.¹⁵⁾ 이후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이 확대되어 1985년 ‘보건연구부속법(Health Research Extension Act)’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의학연구윤리를 다루고 있다.¹⁶⁾

연방 차원에서 미국의 보건의학분야 연구진실성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은 연구진실성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이다.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 과학진실성국(Office of

14)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p. 3

15)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Research_Act

16)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p. 73

Scientific Integrity)과 보건성 차관보실의 과학진실성검토실(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이 1992년에 통합되어 탄생했으며 보건복지 성장관이 그 장을 임명하고 정부(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보건의료분야 연구만 관리한다.¹⁷⁾ 연구진실성국은 보건성 산하 기관이지만 연방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자세한 운영절차의 규정은 보건성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이 아닌 모범에 내부제보자 보호규정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연구진실성국(ORI)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과(Division of Investigative Oversight)와 연구윤리 교육과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교육과(Division of Education and Integrity)가 있다.¹⁸⁾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설치된 감사실은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가 1988년 개정된 '감사관법(Inspector General Act Amendment of 1988)'에 따라 1989년에 만든 조직이다.¹⁹⁾ 감사관(Inspector General)은 국가과학위원회와 의회에 직접 보고하며 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²⁰⁾ 미국과학재단이 2010년에 지원한 연구과제는 2,100개 기관에 55,000개에 달한다고 하니 이 감사관실이 처리해야 하는 일의 양을 짐작해볼 수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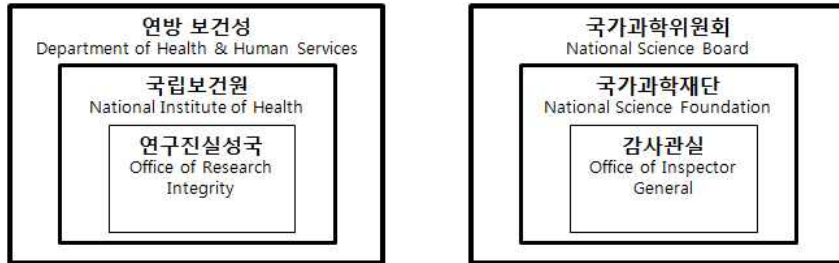
17) http://ori.hhs.gov/policies/regulations_statutory.shtml

18) <http://ori.hhs.gov>

19)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과학위원회는 과학재단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http://www.nsf.gov/about/who.jsp>).

20)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p.78

21) *NSF OIG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March 2011. p.31
http://www.nsf.gov/pubs/2011/oig11002/oig11002_4.pdf



<그림 3>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미국의 양대 조직

앞서 설명한 대로 미국 연구진실성 문제를 총괄하는 양대 조직은 보건성 산하 연구진실성국과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감사관실이다. 그러나 이 두 조직은 각각의 모 기관인 국립보건원과 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한해서만 감독권한이 있는 한계가 있다. 즉, 다른 연방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사업의 연구윤리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곳이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이다. 2000년 12월에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연방정책(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을 발표하여 기타 연방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연구부정행위 정책 지침을 제시하였다. 위조, 변조, 표절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정부의 연구자금을 받는 모든 연구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연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방성, 노동성, 교통성, 보건성, 환경보호청, NASA, 과학재단(NSF) 등 모든 정부기관에서 자체 지침 또는 검증기구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²²⁾ 이후 2005년에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공중보건서비스 정책(42 CFR: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과 교육성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정책지침(Notice of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 2005)’이 발표되어 연구기관의 의무,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²³⁾

22) 과학기술부(2007). p.12,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p.79

23) CFR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뜻하는 것으로 연방의 행정부처나 정부기관에 의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되는 연방의 규정이다(Codification

(2) 특징 및 시사점

국가차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기관이 설치된 경우 중요한 과제는 제보되는 수 많은 연구부정의심행위 중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여 조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 연구진실성국(ORI)의 경우 2008년 총 201건이 접수되어 이 중 113건은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하지 않았고 13건은 타 연방기관으로 이첩하였으며 54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만 진행하여 결국 21건에 대해서만 실제 조사, 심의를 하였다.²⁴⁾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의 타당성과 합리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제도의 특징은 연구부정행위를 변조, 위조, 표절의 3대 행위로 명확하게 정의하였다는 것이다. 개별 연구기관에게는 이 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로 정의하도록 권장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고 좁은 범위로 정의하는 것은 ‘연구자가 어떤 것을 하면 안되고, 국가가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처벌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처벌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⁵⁾

미국은 국가 연구비 집행규모가 가장 큰 연방기관인 보건성(연구진실성국)과 국가과학위원회(과학재단 감사관실)가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 두 기관이 중심역할을 한 것의 부작용으로 정부기관 간의 일관성 부족과 그에 따른 부처 간 협력연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²⁶⁾ 비록 2000년 들어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이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연방지침을 발표하여 타 정부기관도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정부부처 간의 일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미국 제도 하에서 연구진실성 확보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책임이지만 각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정부기

of general and permanent rules).

24) US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2009). *Annual Report 2008*. p.6

25)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p.85

26) 상계서. p.85

관이 언제든지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해당 기관의 조사에 간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해당 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의 종류는 단순경고부터 정직, 연구과제에서 배제, 해고 등으로 다양하다.²⁷⁾ 물론 해당 정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의 감독권과 조사권이 보장된다.

2000년의 연방지침은 개별 연구기관이 연방정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또한 자체 조사 결과 부정행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해당 연방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사본, 징계 담당자에게 제출한 징계권고안 및 이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견을 연구비를 지원한 연방기관에 제출하고 징계처분이 완료된 후에는 결정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부정 의심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하는 수시보고에 추가하여 연방규정(42CFR93)에 의거 제출된 내용과 조사결과를 담아 연례보고서를 인터넷 웹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국과 과학재단은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과학재단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반면 연구진실성국(ORI)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기관을 실명으로 밝히고 있다.²⁸⁾

6. 영국

(1) 관련 조직 및 법규정

영국의 연구윤리정책은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보건부(UK Health Department)에서 관장하고 있다.²⁹⁾ 국가연구윤리실(National

27) 상계서, p.84

28)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p.84-85

29) 영국의 연구윤리 자료는 영국보건부의 보고서를 참고함. UK Department of Health (2009). Governance Arrangements for Research Ethics Committees.

Research Ethics Service)이 보건부 산하에 있고 이 조직에서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윤리실의 기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위원회의 필요 경비 지원, 연구윤리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연구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이다(p. 32).

여러 종류의 개별 의료 관련법에서 어떤 경우에 이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법의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규정(Health Service Regulations 2002), 인간세포조직법(Human Tissue Act 2004), 의료기기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 요양원규정(Nursing Home Regulations 2005)이 있다(p. 29).

보건부의 지침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위원 구성의 기본 원칙은 “위원회가 심의하는 연구계획서의 당위성, 목표, 목적 및 설계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존엄, 권리, 안전 및 복지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다(p.16). 대중의 실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 시민위원(lay member)과 함께 공식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이, 장애여부, 성(sex), 인종, 종교, 신념 및 성적 취향까지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 선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원 수는 18인 이하이며 보건의료분야 연구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위원이 최소 1/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특징 및 시사점

영국의 경우 모든 분야 연구윤리정책을 포괄하는 법규나 조직은 없고 대신 보건부를 중심으로 의학보건분야의 연구윤리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다. 큰 틀을 제시하는 연구윤리법을 두는 대신 보건부 산하에 ‘국가연구윤리실’이라는 전담조직을 두고 이 행정조직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지는 의료 관련 여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보건부의 지침을 통해 연

구윤리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점이 영국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1/3을 일반 시민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연구윤리의 기준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도록 한 점이 특히 주목할 내용이다.

7. 캐나다

캐나다는 연구윤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가 미흡한 국가 중의 하나다. 현재의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는 일종의 협의체로 17개의 정부기관, 시민단체 및 전국대학교수협회(CAUT: 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의 연합체다.³⁰⁾ 캐나다에는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표준(national integrity standard)이 없어 개별 기관마다 연구윤리정책이 다르고 연구부정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점도 없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책도 기관마다 다르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새로운 독립적 기구인 캐나다연구진실성위원회(Canada Council for Research Integrity)의 설치가 고려되고 있다(Stewart, 2011). 이 기구의 주요 역할은 연구윤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 확산시켜 우수 연구표준 및 관행을 촉진하고 개인 연구자 및 기관에 자문을 하는 것이다.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의 의뢰로 2009년 민간정책자문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자문내용은 정부에서 법제정을 하기 보다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윤리정책에 관한 리더십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다만 연구윤리에 관해 도움과 정보가 필요한 모든 개인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권장하고 이 기구에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국가의 비공식적인 감독 활동을 하고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및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교육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iii-vi).³¹⁾

30) Stewart, Penni (2011). "National Standards Needed for Research Integrity," CAUT Bulletin (<http://www.cautbulletin.ca/> 2011.7.20)

31) 캐나다연구진실성위원회(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의 의뢰로 작성

8. 일본

일본은 과학과 경제 분야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 관련 법 제도가 발전되지 못한 대표적 국가 중의 하나다. 오사카시립대학 철학과 의 쓰치야 교수는 이의 근본적 원인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중국에서 자행한 각 중 생체실험의 역사에서 찾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731부대로 알려진 일본 특수부대 소속 의사와 과학자들이 잔인한 생체실험을 하였으나 전후 실험자료를 모두 미국에 넘겨주기로 한 미국과의 비밀 거래로 관련 과학자들은 사면을 받고 일본 의과대학의 교수, 학장, 총장을 역임하게 된다. 교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는 일본의 도제식 분위기에서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들 의학자의 존재 자체가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행동과학분야에서조차도 인간을 활용한 실험이 사회적 금기사항으로 받아들여져 왔다(Tsuchiya, 2002: 1). 한국,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 생명을 다루는 의과학분야에서의 연구윤리 정책 및 제도가 타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일본은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의학분야의 연구윤리제도가 확립되지 못했고 국가차원의 논의 또한 피상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은 2003년에야 처음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지침을 모아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을 발간했다. 임상연구에서 지켜야 하는 피실험자의 존엄과 인권보호를 담았고 임상연구기관에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조직으로는 1949년 내각총리대신의 특별기관으로 설립된 일본학술회의(日本學術會議, Science Council of Japan)와 2001년 내각부 아래 총리의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진 4개의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있다. 이들 기관에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지침으로 일본학술회의는 2003년 미국 연구윤리실(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의 기준을 채택하여 변조, 위조, 표절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였고 2005년에는 ‘과학부정행위와 방지책(Scientific Misconduct and its Prevention)’을 발간하고 2006년에는 ’

한 보고서, The State of Research Integrity and Misconduct Policies in Canada 는 민간정책자문기구인 HAL에 의해 만들어졌다. 2009년 10월.

과학자를 위한 행동지침(Code of Conduct for Scientists)'를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문건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관련 지침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학술회회가 연구윤리에 관해 일본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³²⁾ 한편 종합과학기술회회는 2006년 2월에 관련 정부 부처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³³⁾

일본에는 1,000개가 넘는 대학이 있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70%에 달하는 대학교수가 강의보다는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연구활동이 매우 활발한 나라로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다(Macfarlane & Saitoh: 2008).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지만 일본은 연구윤리에 관한 국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거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각 및 관련 위원회의 지침 형태로 제시하는 비교적 느슨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및 사후 처리는 모두 해당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 학문의 자유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본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9. 한국

(1) 관련 조직 및 법규정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관련 법규정은 단순명료하지 않고 종류가 많으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한상연, 2012). 2011년 전면 개정하여 15조에 연

32) 일본학술회회의 웹사이트(<http://www.scj.go.jp/>) 영문 소개 내용을 보면 과학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해결하며 제 과학 분야 간 협력을 통한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1949년 총리대신 아래 설치된 특별기관(Special Organization)으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을 포괄하는 30개의 전공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33) 일본의 연구윤리조직 및 지침에 관한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학술진흥재단(2008).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56-63쪽)와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The State of Research Integrity and Misconduct Policies in Canada. 113-116쪽 참고함.

구윤리 관련 조항을 담은 학술진흥법, 18조에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 연구윤리 관련법이다. 이 법에 의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6-21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및 법제처장은 당연직이고 학계·연구계·산업계에서 7인 이내의 위원을, 종교·철학·윤리·사회과학·법조·시민단체에서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4조는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에 관한 조항이나 실제 그 내용은 연구윤리에 관한 것을 담고 있지 않다. 9조에 명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 법 개정으로 그 위상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정책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교원의 처벌은 주로 공무원법 56조와 63조의 '정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인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외에 저작권법, 행정절차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관련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규정과 지침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등이 있다. 이 관련 규칙에 따라 2010년 연구윤리위원회를 연구윤리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고 위원 13명(대학 5명, 학회 2명, 정부출연연구소 2명, 언론계 1명, 교과부 학술정책관, 연구재단 감사)을 임명하였다.³⁴⁾ 본 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다.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와 이들 소속 기관이나 행정기관 간 분쟁이 있을 경우 결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수순이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³⁵⁾

34) 제3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과, 2010.11)

35)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관련 법규정과 기관 소개는 한상연(2012)에 자세히 나와 있다.

(2) 주요 특징 및 시사점

한상연(2012)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법체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관련 법률 중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한 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지만 대부분 관련 규정, 규칙 및 지침이 이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외국의 경우 크게 보건의료,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으로 나누어 제도를 달리하는 반면 우리는 어느 분야에 어떤 법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보건의료분야의 윤리적 연구를 위한 규정, 규칙, 지침은 없으며 인문사회분야 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은 있지만 이에 기초한 규정과 지침은 없다(한상연, 2012: 6).

관련 조직의 위상과 역할도 미흡하거나 불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개 이상 중앙기관이 관련된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나 논란의 분야가 과학기술이 아닌 인문사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더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노르웨이나 덴마크처럼 분야별로 전문화된 복수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III. 각국의 연구윤리 법제도 비교 및 유형화

1. 비교분석의 주요 시사점

(1) 연구윤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일본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 부분의 경우 연구윤리 관

련법에서 연구윤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윤리자문위원회보다 주어진 기능과 권한이 많고 활동범위가 넓다.

(2) 교육, 과학과 보건 관련 부처에서 중심 역할 수행

덴마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에서 국가과학부정행위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교육연구부장관이 국가윤리위원회와 과학부정행위조사국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미국의 경우 연구진실성국과 감사관실의 소관 부처는 보건성과 교육성이다. 대부분 국가가 이런 경우로 결국 교육, 과학, 의료분야의 중앙부처가 협력을 해야 효과적인 연구윤리 국가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시사점이다.

<표 1> 외국의 연구윤리 전담조직 사례

국가	조직명
노르웨이	의학연구윤리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edical Research Ethics) 과학기술연구윤리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사회과학·인문학연구윤리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Research Ethics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과학부정행위조사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Scientific Misconduct)
미국	국가과학재단 조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보건성 연구진실성·윤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호주	보건윤리위원회(Australian Health Ethics Committee) 연구진실성위원회(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덴마크	과학부정행위위원회(Danish Committee on Scientific Dishonesty)

(3) 국가별 다양한 연구윤리 거버넌스 모델 존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타 국가와 동일한 모습의 거버넌스체계를 갖춘 나라는 하나도 없다. 결국 각 나라의 역사, 문화와 전통, 기존 법체계, 정치제도, 지도자의 의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나라별로 적절한 법제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국가별 법제도의 유형화

지금까지 살펴 본 외국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유형화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한 법규정의 유무, 관련 중앙조직의 유무, 정부차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기구 설치 여부 등이 특정 유형의 판단 기준이 된다. 미국, 노르웨이를 예로 들 수 있는 ‘국가주도형 모델’, 영국, 독일, 캐나다가 대표적 사례인 ‘연구비 지원기관 주도형 모델’ 및 일본, 호주, 프랑스가 대표적 사례인 개별 ‘연구기관 자율형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³⁶⁾

(1) 국가주도형 모델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가 이 유형의 대표적 국가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령을 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부정행위 조사권을 부여받은 중앙의 연구진실성 조직이 있어 보통 1단계 조사는 개별 기관이 하지만 개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중요한 사안인 경우 이 중앙 기관에서 2단계 조사를 진행한다. 법제화된 연구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변조, 조작 및 표절로 제한된다. 이 유형의 나라들은 국가적 법제화를 통해 정책실현을 하는 만큼 복잡한 법개정 절차로 인해 변화하

36) 각국 제도의 유형화는 캐나다연구진실성위원회(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 *The State of Research Integrity and Misconduct Policies in Canada* (2009), 47-50쪽에서 제시된 자료를 인용함. 이 보고서에는 각 유형을 1,2,3형으로 나누고 있어 본 연구자가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 명칭을 부여하고 한국을 추가함.

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2) 연구비 지원기관 주도형 모델

한국, 영국, 독일, 캐나다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법령은 없고 국가의 연구비지원위원회(Research Councils)나 우리나라의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 수행 및 연구부정행위 감독 활동을 한다. 이 지원기관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구수행기관에서는 이를 기초로 의무적으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대개 국가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기관에서도 준용하는 준국가표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연구위원회와 연구재단에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문제이다. 즉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기능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3) 개별 연구기관 자율형 모델

일본, 호주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나라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법령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어떤 독립적인 중앙 조직도 없는 특징이 있다. 연구윤리에 관한 정식 법령은 없지만 호주에는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지침(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이 있고 일본에는 ‘과학자의 행동지침(Code of Conduct for Scientist Statement)’이 있어 개별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에 관한 국가별 법제도 유형

유형	국가	국가적 차원의 법령제정	관련 중앙 조직 설치	국가연구비 지원위원회 (재단)의 감독	국가 정책 및 지침 제시	연구부정 행위 조사기구
1유형 국가 주도형	노르웨이	○	○	×	×	중앙기구 및 개별 연구기관
	덴마크	○	○	×	×	중앙기구 및 개별 연구기관
	미국	○	○	○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중앙기구 및 개별 연구기관
2유형 연구비 지원 기관 중심형	독일	×	○	○	준(quasi) 지침	옴부스만 및 개별 연구기관
	영국	×	○	○	준(quasi) 지침	개별 연구기관
	캐나다	×	×	○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개별 연구기관
	한국	×	○	○	중앙부처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연구비 지원기관 및 개별 연구기관
3유형 개별 기관 자율형	일본	×	×	○	○	개별 연구기관
	호주	×	×	제한적	○	개별 연구기관

출처: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State of Research Integrity and Misconduct Policies in Canada (2009)*. 47쪽. 연구자가 원자료에 한국을 추가하고 유형별 명칭부여함. * 호주에는 2011년 2월 관련 중앙기관(위원회)이 설치됨.

이 세 가지 유형은 다른 점도 있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McCubbins와 Schwartz(1984)가 설명한 개념으로 연구윤리 관련 제도가 ‘화재경보기(fire alarm)’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즉 연구

부정행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감시하는 ‘순찰활동(Police Patrol)’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연구활동을 모니터하다가 문제 발생 시 경보를 울리는 화재경보기의 역할을 하도록 대부분의 법제도가 설계되었다는 것이다.³⁷⁾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은 보통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제보가 있을 때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통점도 발견된다.

IV. 맺는말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해 보니 동일한 국가 연구윤리거버넌스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나라의 역사, 문화와 전통, 기존 법체계, 정치 제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각 국가마다 적절한 법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에 비교할 때 아직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관련 중앙부처 및 학계, 연구계 등 관련 기관 간 협의와 교수,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 본 대로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법제도는 크게 국가가 법령의 제정을 통해 정책수립부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과 국가가 법제정 없이 선언적 차원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개별 학술(연구)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윤리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체계를 확립하는 모델은 노르웨이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에 관한 법’과 덴마크의 ‘국가과학부정행위위원회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참고로

37) 이 개념은 McCubbins, Mathew & Schwartz, Thomas. "Congressional Oversight Overlooked: Police Patrols Versus Fire Ala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February, 1984. 28(1): 165에서 소개한 것으로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2009) *The State of Research Integrity and Misconduct Policies in Canada*. p. 49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함.

제시될 수 있다. 국가가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연구부정행위의 심의를 국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또 다른 대안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인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은 연구윤리의 확보에 관해 국가적 차원의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개별 연구기관이 연구진실성 확보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책임을 지고 국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정책대안인 것이다. 연구윤리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이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연구기관이나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연구지원기관 중심으로 연구진실성 확보 노력을 펼칠 경우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국가의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기관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사건 발생 및 처리 결과의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통해 새로운 국가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개발하는 선순환 과정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

- 과학기술부(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과학기술혁신본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20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10-20집』.
- 교육과학기술부·학술진흥재단(2008).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 한상연(2012). 우리나라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 30권. 제4호.
- Australian Research Council(2011). 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Framework. Australian Government.
- Canad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2009). The State of Research Integrity and Misconduct Policies in Canada. (Prepared by HAL consultants)
- Danish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2008). Annual Report of the Danish Committee on Scientific Dishonesty.
- Dyke, Tomothy(2010). "The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Challenges and Responses." Proceedings from 2nd World Congress on Research Integrity (Singapore, July 21-24, 2010).
- European Science Foundation(2010). Fostering Research Integrity in Europe.
- Hall, Bruce(2006). "Australia needs an office of academic integrity." MJA. 185(11).
- Finland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2006). Ethical Evaluation of Research Ethics in Finland.
- Fischer, Peggy(2010). "Experiences in Developing Research Integrity Structure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ceedings from 2nd World Congress on Research Integrity (Singapore, July 21-24, 2010).
- Kalleberg, Ragnvald(2011). "The interplay of self-regulation, National

- guidelines and law in the Norwegian system." Proceedings from the conference, Reaching a Global Stand in Research Integrity, European Science Foundation. 21 Feb. 2011.
- Macfarlane, Bruce & Saitoh, Yoshiko(2008). "Research Ethics in Japanese Higher Education: Faculty Attitudes and Cultural Mediation." *Journal of Academic Ethics*.
- McCubbins, Mathew & Schwartz, Thomas(1984). "Congressional Oversight Overlooked: Police Patrols Versus Fire Ala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February, 1984. Vol. 28. No. 1.
- Royal Irish Academy(2010). *Ensuring Integrity in Irish Research: A Discussion Document*.
- Rumball, Sylvia and John O'Neill(2010). "Research Integrity in New Zealand: Current Framework,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Committee for Freedom and Responsibilities in the Conduct of Science. Proceedings from 2nd World Congress on Research Integrity (Singapore, July 21-24, 2010)*.
- Stewart, Penni(2011). "National Standards Needed for Research Integrity." *CAUT Bulletin* (<http://www.cautbulletin.ca/2011.7.20>)
- Tsuchiya, Takashi(2002).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Ethics of Human Experimentation in Japan." The paper presented at the 7th International Tsukuba Bioethics Roundtable. February 17, 2002. Tsukuba University, Japan
- UK Department of Health (2009). *Governance Arrangements for Research Ethics Committees*.
- US Office of Research Integrity(2009). *Annual Report 2008*.
- Vuorio, Eero(2010). "How to revise national research guidelines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landscape?." *Proceedings from 2nd*

World Congress on Research Integrity (Singapore, July 21-24, 2010).

| 논문투고일 : 2013년 10월 27일 |

| 논문심사일 : 2013년 11월 27일 |

|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0, No. 3 (2013)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Academic Research Ethics of Major Countries

Sang-Yun Han

(Kyung Hee University)

Eunok I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ince the launching of the OECD International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in 2007 devising a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o enhance research integrity. Although the concept of research ethics may differ among countries there are basic principles of research ethics that each country should value to enable such collaborati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of Norway, Denmark, Finland, USA, UK, Canada, Australia, Japan and Korea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Korea, which seems to have developed a medium-level research integrity governance system like UK and Canada.

Key words: Research Ethics, Research Integrity, Research Ethics Law, Research Integrity Governance